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교보약사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교보약사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의 본·지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3년 3월 1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년 3월 21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 또는 매출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 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5
3. 모집예정금액	5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5. 인수에 관한 사항	5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5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6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7
4. 집합투자업자	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7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3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4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8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5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6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34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8
1. 재무정보	3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41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43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48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48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50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50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1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1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51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3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53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56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56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0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1

[붙임] 용어 풀이..... 62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보관용)]..... 6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89527)									
종류 (클래스)	A1	C1	C2	C3	C4	Ch	Ce	C장기주 택마련	Af	CP
한국금융투 자협회 펀드코드	89524	89525	92659	92660	92661	92662	89526	92663	92664	A103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 (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본·지점으로 판매회사의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홈페이지 참고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89527)									
종류 (클래스)	A1	C1	C2	C3	C4	Ch	Ce	C장기주 택마련	Af	CP
한국금융투 자협회 펀드코드	89524	89525	92659	92660	92661	92662	89526	92663	92664	A103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주요 내용
2008.12.19	- 최초설정
2009.05.03	- 자본시장법에 따른 명칭 변경 변경전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주식 자투자신탁 1호 변경후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009.10.15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른 이익분배 조항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Class Af 수익증권 가입자격 변경 -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한 소득세 감면사유 일부 수정 - 집합투자업자 관련 사항(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주소, 운용규모 등) 개정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개정
2010.02.24	- 투자설명서 정기 갱신 (직전 회계년도 기준 : 2009.12.18) - 작성기준일 변경(2009.9.28→2010.02.18)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 자산운 용회사 운용규모 등 관련 사항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09.12.21 시행, 제92조(자산운 용보고서) 및 제270조(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따른 반영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0.1.1 시행]에 따른 과세에 관한 사항 반영 -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2011.03.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06.13 시행, 개정사항 : 소규모 펀드 해지 및 수시공시 사항]개정에 따른 반영 - 작성기준일 변경(2011.03.08)에 따른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및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등 업데이트 - 결산에 따른 업데이트 - Class CP 수익증권(퇴직연금 전용) 신설 - 채권평가회사 명칭 변경 (한국채권평가 → 한국자산평가)
2012.03.08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및 집합 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등 업데이트
2012.05.16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다른 자투자신탁 신설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

	자신탁 1호(채권혼합)]
2013.0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예금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2012.02.27 시행]에 따른 예금자보호안내문 관련 문구 수정 - 소득세법 개정('13.01.01)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관한 사항 변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내에 다른 자투자신탁(교보약사 재형 밸런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신설 -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집합투자업자 운용규모, 채권평가회사(한국자산평가 주소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교보약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767-9600

주1)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2013.03.18 현재)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팀운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박찬	1971	본부장	23개	31,31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부 파생상품팀 - 교보증권 법인사업부 금융공학영업팀 - (현) 교보약사자산운용 INDEX/QUANT 운용본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5개 (2,288억)]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INDEX/QUANT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며 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 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형(주식형), 투자신탁,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1	수익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Class C1	수익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하지 않음
Class C2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Class C3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Class C4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Class Ch	건별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Class 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C장기주택마련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Class Af	가.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나.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라.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마.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Class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주1)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 1호 (주식)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주식)		95% 이상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채권혼합)		30% 이하
교보약사 재형 밸런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50% 이하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모투자신탁**을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벤치마크인 KOSPI200 지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주로 투자하고 이에 따른 추적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①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모투자신탁	95% 이상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모투자신탁 1호(주식)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5%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을 위해 운용함.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②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의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②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내 주식'	7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이하 "국내 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3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어음	3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가 되도록 한다.		
⑥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⑦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로 한다.		
⑧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

		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주식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⑩	증권의 차입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 이하
⑪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⑫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⑬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p>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 ⑤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상기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 기준임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 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	

	<p>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동일종목 투자</p>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p>	<p>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p>
	<p>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법 제2조 제7호의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어음에 한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채무증서 및 어음, 동조항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채권(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에 한한다), 채무증서 및 어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것에 한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p>파생상품 투자</p>	<p>파생상품의 매매에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 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최초설정 일로부터 1개월간</p>
	<p>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p>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투자하는 행위</p>	
	<p>적격요건(투자적격등급 이상의 평가)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p>	

지분증권 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다.	
후순위채권에 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10호, 제19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1)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여 KOSPI 200 지수를 수익률을 추적하면서 KOSPI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주식형)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써 모투자신탁의 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형)투자신탁으로 국내 KOSPI200 지수 구성 종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KOSPI200 지수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합니다.
- (3)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펀드에 편입되는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KOSPI 200지수를 구성하는 주식들로서 KOSPI 200지수를 구성하는 비중과 유사하게 구성되며 추적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운용됩니다.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내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 ②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 200 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③ 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 ④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 (4) 세부 운용전략
 - ①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시스템 운용
 - 당사 인덱스 펀드 운용에 사용되는 KOSPI200복제 System 사용

- 월 정기 리밸런싱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하여 추적오차의 최소화
- 추적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리밸런싱 제약조건을 통하여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
- ②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주식들의 배당 수익
- ③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 KOSPI200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수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률이 낮은 것을 매수하고 수익률이 높은 것을 매도하였다가 향후 수익률의 차이가 줄어들거나 역전이 되는 경우 청산하는 차익거래
 - 현물 vs 선물 차익거래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선물)
 - 현물 vs 합성선물 차익거래 (KOSPI200복제 포트폴리오 vs KOSPI200합성선물)
 - 선물 vs 옵션 차익거래 (KOSPI200선물 vs KOSPI200합성선물(옵션))
 - 현물 vs 개별주식 선물 차익거래 (개별종목 vs 개별주식 선물)
- ④ 보유 주식 대차를 통한 대차수수료 수익
- ⑤ 보유 주식의 매수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청구권 행사

※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 KOSPI 200 지수 * 100%

- ※ KOSPI 200 지수 (Korea Stock Price Index 200)
-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주가지수
- 선물 및 옵션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수 복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나. 위험관리

- 추적오차(Tracking Error) 관리 방안

투자자산 중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당사의 인덱스 복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 되어지고, 구성된 인덱스 복제 주식 포트폴리오는 사전에 정해진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에 따라 정기 리밸런싱(월별) 및 상시 리밸런싱을 통해 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5% 이상의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 됩니다. 단, 인덱스 구성 종목의 변경 또는 구성종목의 비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운용프로세스상 제약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월별로 변경 가능 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 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국내주식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 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추적오차 발생위험 (Tracking Error)	이 투자신탁은 추적대상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실현함을 그 투자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투자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등관련 비용의 지출 등 현실적 제한으로 인하여 추적대상 지수(KOSPI200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이 실현되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수익률과 추적대상 지수의 수익률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하는 투자는 당해 추적오차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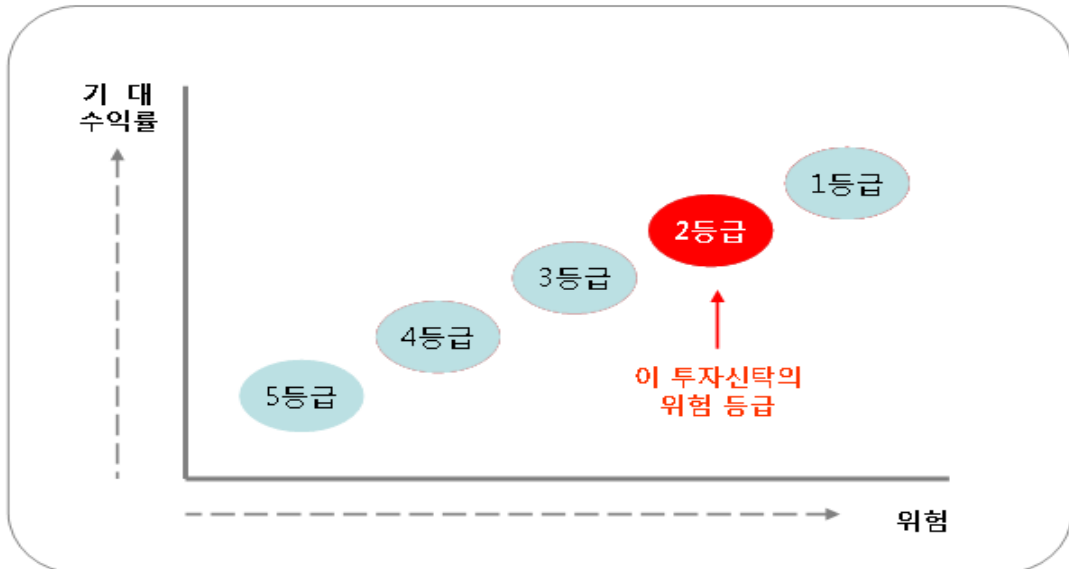
다. 기타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이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 중 재산가치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 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 위험	추가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사전 동

	의 없이 해당 투자신탁을 해지 또는 해산할 수 있습니다.
기타위험	투자신탁과 관련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이나 입법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설명서상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2008년 10월 시행된 장기주식형(적립식)펀드의 세제우대에 해당되는 수익자의 경우에는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 및 소득공제)이 추징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 및 소득공제)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환매수수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가급적 투자시점에 자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시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 등급 (2) 등급 높은 위험 수준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추적대상지수인 **KOSPI200 지수**에 연계되어 있는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주식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위험 및 기대수익이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수준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또는 주가지수선물 등의 파생상품에 투자하게 되므로 그 수익률은 추적대상지수의 수익률에 연동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의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 ▶ 향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지만 투자대상종목에 선정 어려움을 느끼는 투자자
- ▶ 특정 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하지 아니하고 분산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
- ▶ KOSPI200지수 수익률에 연동하여 투자수익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 ▶ 추적대상지수(KOSPI200지수)와 관련한 다양한 차익거래 (선물 vs 현물)의 이익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투자자

또한,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시장 변동성 등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Class C<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만 18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7년 이상의 저축을 통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교보약사자산운용(주) 자체 투자위험등급 분류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증권에의 순투자비중이 60% 이상인 주식액티브형 집합투자기구 담보나 지급보증이 없는 부동산 또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원금손실률이 20% 이상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증권에의 순투자비중이 30% 이상 ~ 6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또는 주식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한도가 BBB등급 미만이거나 후순위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나 지급보증이 부분적인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원금손실률이 10% 이상 ~ 20% 미만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증권에의 순투자비중이 30% 미만인 집합투자기구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한도가 BBB등급인 집합투자기구 담보나 지급보증이 완전한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 원금손실률이 10% 미만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차익거래형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증권의 신용등급 한도가 A등급 이상인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전 추구형으로 설계된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증권에의 투자가 국공채로 한정된 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주1)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은 교보약사자산운용의 내부기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집합투자기업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2) 상세설명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여 분류합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절차 및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1	수익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
Class C1	수익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하지 않음
Class C2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Class C3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Class C4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자
Class Ch	건별 납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Class Ce	판매회사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한 자
Class C <장기주택마련>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Class Af	가. 법에서 규정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나.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라. 최초납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개인 마. 최초납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
Class C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

주1) 각 종류별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증권의 전환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lass 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Class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2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2. Class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3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3. Class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Class 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 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

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명업일에 전환 처리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Class 수익증권의 기준 가격으로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전환하지 아니한다.
- ⑤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 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 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Class C<장기주택마련>수익증권의 상품 주요 내용

: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가. 2010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투자자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합산)
계약기간	7년 이상 (당해 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혜택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7년 이상 가입시)
감면세액 추징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장기주택마련 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div>

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투자자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만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기관 합산)
계약기간	7년 이상 (당해 기간동안 원금이나 이자 등의 인출이 없는 경우에 한함)
혜택	①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7년 이상 가입시)
 ② 소득공제 : 당해 저축 불입액의 40%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5항, 동법시행령 제112조
 - 한도 :
 i) 아래 표 1과 2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ii) 아래 표 1과 2 및 3을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 한도임

구분	소득공제비율	내용
1.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공제	저축불입액의 40%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 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3) 조특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2. 주택임차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3.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 의거,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감면세액 추정
 당해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기관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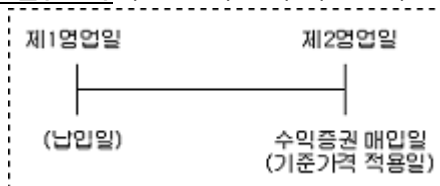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p>소득공제 추징</p>	<p>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을 추징합니다.</p> <p>- 1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을 추징합니다.</p> <p>-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p> <p>다만, 가입자가 당해 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p> <p>1. 천재·지변 / 2. 저축자의 퇴직 / 3. 사업장의 폐업 / 4.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div>																				
<p>감면받은 세액 추징관련 예시</p>	<p>- 매월 50만원을 적립한 경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ad3;"> <th style="width: 10%;">해지일 (저축가 입일로 부터)</th> <th style="width: 10%;">배당소 득세</th> <th style="width: 10%;">소득 공제</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징</td> <td style="text-align: center;">40만원 추징</td> <td>소득공제추징세액 : 1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징</td> <td style="text-align: center;">72만원 추징</td> <td>소득공제추징세액 : 5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징</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징하 지않음</td> <td>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배당 소득감면세액만 추징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징하 지않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징하 지않음</td> <td>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 및 배당 소득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td> </tr> </tbody> </table> <p>※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p>	해지일 (저축가 입일로 부터)	배당소 득세	소득 공제	내용	10개월	추징	40만원 추징	소득공제추징세액 : 1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	3년	추징	72만원 추징	소득공제추징세액 : 5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6년	추징	추징하 지않음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배당 소득감면세액만 추징함	8년	추징하 지않음	추징하 지않음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 및 배당 소득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해지일 (저축가 입일로 부터)	배당소 득세	소득 공제	내용																		
10개월	추징	40만원 추징	소득공제추징세액 : 1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60만원 한도)																		
3년	추징	72만원 추징	소득공제추징세액 : 5년 이내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불입총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 한도)																		
6년	추징	추징하 지않음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고 배당 소득감면세액만 추징함																		
8년	추징하 지않음	추징하 지않음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감면세액 및 배당 소득감면세액 추징하지 않음																		

(5)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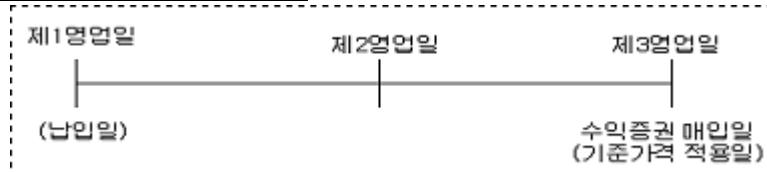
(가) 오후3시(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3시(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집합투자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5시[오후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6)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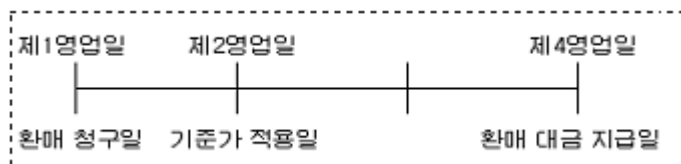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3시(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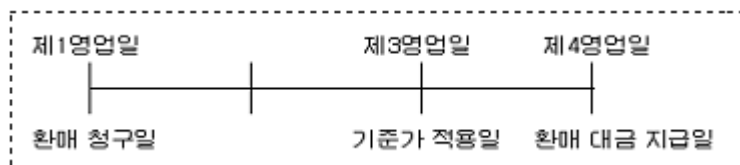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 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후3시(1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 금액 지급



* 환매대금 실 수령일은 환매청구 후 제4영업일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1)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은 당일15시[오후3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환매청구는 당일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부과비율(연간,%)	비고
Class A1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환매시
Class C1		
Class C2		
Class C3		
Class C4		
Class Ch		
Class Ce		
Class C <장기주택마련>		
Class Af		
Class CP		

주1) 이익금 :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종류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2. 천재지변 / 3. 저축자의 퇴직 / 4. 사업장의 폐업 /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6.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 [오후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

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③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기타 법 시행령 제25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
-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법 시행령 제25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1항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 ⑥ 집합투자업자는 제5항에 따라 환매가 연기된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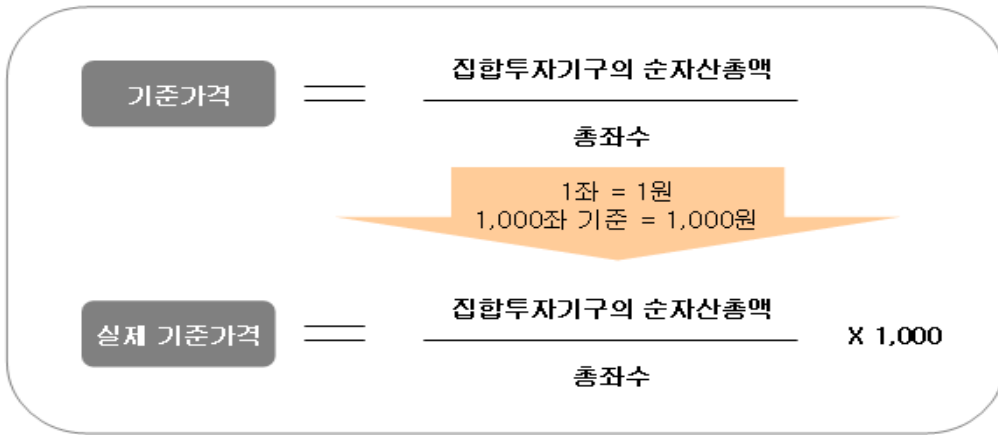
-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한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 게시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kyoboaxa-im.co.kr), 판매회사 영업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③-①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①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율										지급 시기
	A1	C1	C2	C3	C4	Ce	Ch	C<장기주 택마련>	CP	Af	
선취판매 수수료	0.8%	없 음								0.03%	매입 시
환매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

수수료		시
환매 수수료	없음	환매 시
전환 수수료	없음	전환 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기준임.

②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기준임.

③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 (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없음	납입금액의 0.50% 이내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A-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 진 것을 포함한다) - 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 한 전문투자자 (변액보험을 포함한다),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 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 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 하는 법인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하 다) -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 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 입한 법인	납입금액의 0.02% 이내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보수			비용	
A1	0.15	0.48	0.01	0.005	0.0026	0.6476	0.6512	0.0601
C1	0.15	1.12	0.01	0.005	0.0026	1.2876	1.2912	0.0586
C2	0.15	1.01	0.01	0.005	0.0026	1.1776	1.1811	0.0612
C3	0.15	0.91	0.01	0.005	0.0027	1.0777	1.0814	0.0607
C4	0.15	0.82	0.01	0.005	0.0023	0.9873	0.9903	0.0608
Ch	0.15	0.30	0.01	0.005	0.0000	0.4650	0.4650	0.00
Ce	0.15	0.20	0.01	0.005	0.0026	0.3676	0.3711	0.0603
C<장기 주 택마련>	0.15	1.00	0.01	0.005	0.0001	1.1651	1.1687	0.0608
Af	0.15	0.00	0.01	0.005	0.0025	0.1675	0.1709	0.0684
CP	0.15	0.60	0.01	0.005	0.0000	0.765	0.765	0.0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 회계기간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설명서 작성일 현재는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12.19 ~ 2012.12.18]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직전 회계연도 : 2011.12.19 ~ 2012.12.18]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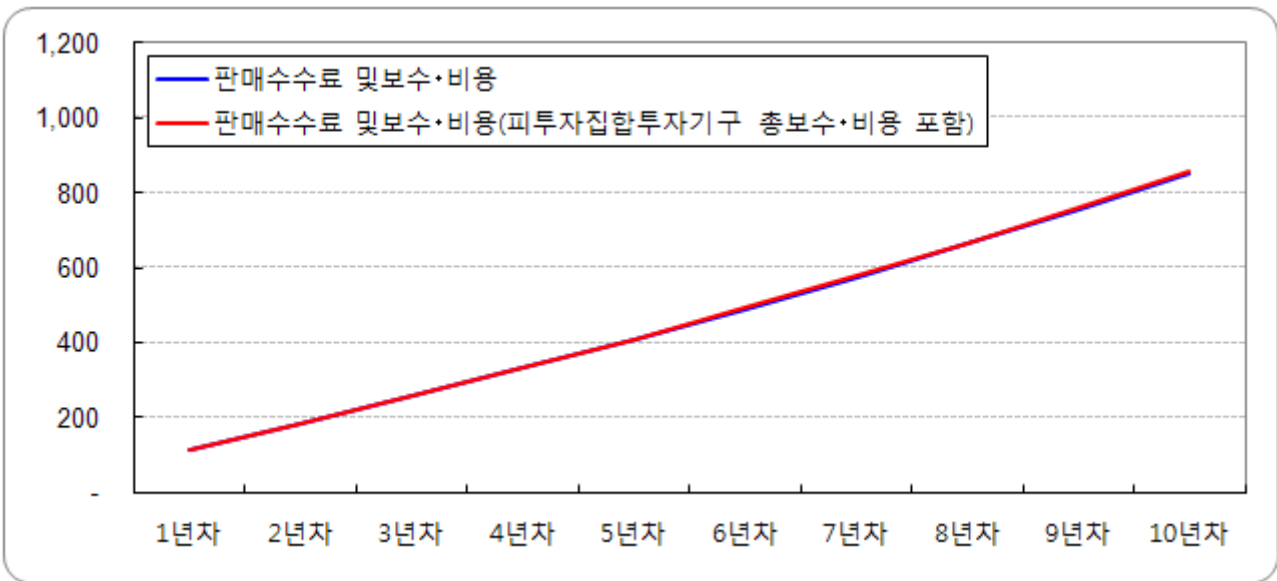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기타비용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는 기타 비용)

-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단,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 ②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 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아래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③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주1) 위 그래프는 이 투자신탁의 Class A1 수익증권의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을 나타냄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Class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6	256	409	85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6	257	411	856
Class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2	411	710	1,56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33	412	712	1,565
Class 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21	376	651	1,43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1	377	653	1,439
Class 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344	597	1,32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1	346	599	1,324
Class 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1	316	548	1,21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02	317	550	1,218
Class Ch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	150	261	5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8	150	261	586
Class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	118	207	46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8	119	209	470
Class C<장기 주택마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9	372	644	1,4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0	373	646	1,425
Class A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	56	97	21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0	57	98	220
Class 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245	427	95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 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78	245	427	951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	-
판매회사보수	-	
신탁업자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기타비용 ^{주1)}	0.0032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0.0032	
합성 총보수·비용	0.0032	
증권 거래비용	0.0613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12.19 ~ 2012.12.18]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1.12.19 ~ 2012.12.18]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6) 모투자신탁의 경우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비용을 제외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은 자투자신탁에 비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채권혼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 (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용
A	0.15	0.42	0.02	0.01	-	0.60	0.60	-
A-F	0.15	0.00	0.02	0.01	-	0.18	0.18	-
C	0.15	0.72	0.02	0.01	-	0.90	0.90	-
C-E	0.15	0.50	0.02	0.01	-	0.68	0.68	-
C-I	0.15	0.30	0.02	0.01	-	0.48	0.48	-
C-W	0.15	0.00	0.02	0.01	-	0.18	0.18	-
C-P	0.15	0.60	0.02	0.01	-	0.78	0.78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주2)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교보약사 재형 밸런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구분	지급비율 (연간,%)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1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48	
신탁업자 보수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	
기타비용 ^{주1)}	-	사유 발생시
총 보수.비용 (TER) ^{주4)}	0.60	매 3 개월 후급
합성 총보수·비용 ^{주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0.60	매 3 개월 후급
증권 거래비용 ^{주3)}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치화된 추정치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증권거래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매3개월) 익영업일에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① 이익분배금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매수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을 제외한 이익분배금을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익자가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세제혜택을 받는 장기주식형 저축 가입자인 경우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 매수하여야 합니다.

② 상환금 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 및 자투자신탁 수익자의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자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할 수 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과세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 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 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 ②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Class C <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에 대한 과세

- 투자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등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0%	가입불가	가입불가

주민세	0%	가입불가	가입불가
계	0%	가입불가	가입불가

- 다만, 수익자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세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주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합니다.

※주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제5항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7년 이내에 중도 해지시 소득에 대한 과세율>

구분	개인	일반법인	금융법인
소득세	14.0%	가입불가	가입불가
주민세	1.4%	가입불가	가입불가
계	15.4%	가입불가	가입불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적립식 주식형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 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아래와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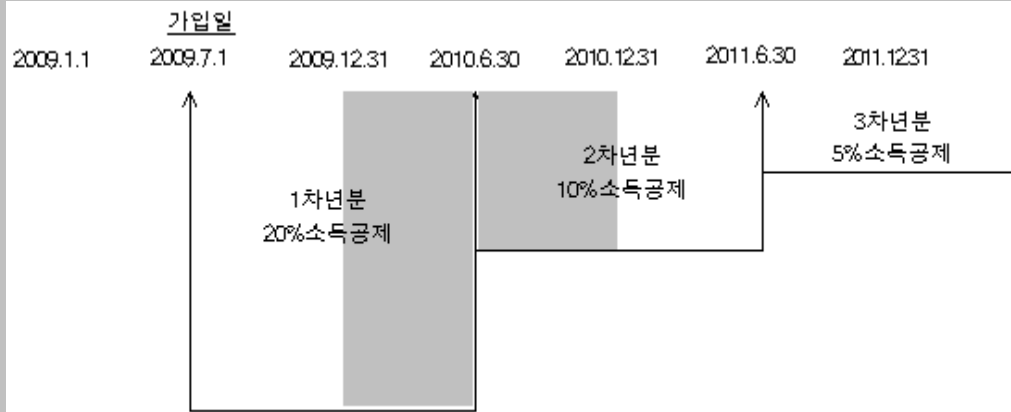
-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불입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 3) 소득공제 비율 :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3년차 : 기

간 중 불입액의 5%

4)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5) 계약 관련 유의사항 :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3년째 이후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 및 소득공제)이 추징됩니다. 특히,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 및 소득공제)이 추징 될뿐만 아니라 환매수수료도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가급적 투자시점에 자금의 성격 등을 감안하시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0월 시행된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에 해당되는 수익자의 경우, 적립기간 중도에 투자신탁을 전환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비과세 및 소득공제)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4기(2011.12.19 - 2012.12.18)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3기(2010.12.19 - 2011.12.18)	삼덕회계법인	적정
제2기(2009.12.19 - 2010.12.18)	삼덕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2.12.18)	(2011.12.18)	(2010.12.18)
운동자산	262,341,168,839	168,796,839,826	99,138,990,692
증권	262,339,747,858	168,796,783,195	99,135,840,89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420,981	56,631	3,149,801
기타 운동자산	0	0	0
기타자산	6,694,184,703	609,339,972	1,097,157,293
자산총계	269,035,353,542	169,406,179,798	100,236,147,985
운동부채	0	0	0
기타부채	6,690,167,973	613,369,380	1,249,765,644
부채총계	6,690,167,973	613,369,380	1,249,765,644
원본	258,840,958,449	186,490,510,650	79,303,090,401
수익조정금	-4,880,803,420	-5,916,811,773	-765,915,428
이익잉여금	8,385,030,540	-11,780,888,459	20,449,207,368
자본총계	262,345,185,569	168,792,810,418	98,986,382,341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11.12.19 - 2012.12.18)	(2010.12.19 - 2011.12.18)	(2009.12.19 - 2010.12.18)
운동수익	29,733,737,584	-10,973,871,931	20,854,880,455
이자수익	7,542,421	2,072,681	989,035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29,726,195,163	-10,975,944,612	20,853,891,420
기타수익	194,253,644	177,987,966	162,188,283
운동비용	1,486,462,967	970,281,527	559,903,851
관련회사 보수	1,486,462,967	970,281,527	559,903,851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1,069,186	14,722,968	7,957,520
당기순이익	28,420,459,075	-11,780,888,460	20,449,207,367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원)

과 목	제4기(2012.12.18)		제3기(2011.12.18)		제2기(2010.12.18)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420,981		56,631		3,149,801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20,981		56,631		3,149,801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334,430,267		135,110,000		73,040,059
1. 콜론	334,430,267		135,110,000		73,040,059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62,005,317,591		168,661,673,195		99,062,800,832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62,005,317,591		168,661,673,195		99,062,800,832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6,694,184,703		609,339,972		1,097,157,29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70,802		57,187		25,090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694,113,901		609,282,785		1,097,132,203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69,035,353,542		169,406,179,798		100,236,147,985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6,690,167,973		613,369,380		1,249,765,644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6,304,839,482		324,979,435		1,096,603,032	
4. 수수료미지급금	382,071,901		284,307,925		151,450,592	
5. 기타미지급금	0		0		0	
6. 기타부채	3,256,590		4,082,020		1,712,020	
부 채 총 계		6,690,167,973		613,369,380		1,249,765,644
자 본						
1. 원 본	258,840,958,449		186,490,510,650		79,303,090,40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3,504,227,120		-17,697,700,232		19,683,291,940	
(발행좌수 당기: 258,840,958,449 좌		이익잉여금	8,385,030,540		-11,780,888,459	20,449,207,368
전기: 186,490,510,650 좌		수익조정금	-4,880,803,420		-5,916,811,773	-765,915,428
전전기: 79,303,090,401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912.91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262,345,185,569		168,792,810,418		98,986,382,34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69,035,353,542		169,406,179,798		100,236,147,985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4기(2011.12.19-2012.12.18)		제3기(2010.12.19-2011.12.18)		제2기(2009.12.19-2010.12.18)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01,796,065		180,060,647		163,177,318
1) 이 자 수 익	7,542,421		2,072,681		989,035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194,253,644		177,987,966		162,188,283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9,837,308,299		3,302,700,805		20,968,589,375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0					
7) 기타거래차익	29,837,308,229		3,302,700,805		20,968,589,375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11,113,136		14,278,645,417		114,697,955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0		0		0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63,352		15,701		9,001	
8) 기타거래손실	111,049,784		14,278,629,716		114,688,954	
운 용 비 용		1,507,532,153		985,004,495		567,861,371
1. 운용수수료	339,603,556		198,219,349		114,431,233	
2. 판매수수료	1,124,219,923		758,848,197		437,844,393	
3. 수탁수수료	22,639,488		13,213,981		7,628,225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1,069,186		14,722,968		7,957,52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8,420,459,075		-11,780,888,460		20,449,207,36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09798925		-0.063171517		0.25786141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① Class A1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1,299	1,180	917	882	770	758	1,446	1,461
2010.12.19- 2011.12.18	561	561	1,154	1,117	415	419	1,299	1,180
2009.12.19- 2010.12.18	232	232	772	804	443	482	561	703

② Class C1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201	182	285	272	305	297	181	181
2010.12.19- 2011.12.18	90	90	308	301	197	196	201	182
2009.12.19- 2010.12.18	52	52	191	199	153	164	90	112

③ Class C2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114	103	274	264	188	181	200	199
2010.12.19- 2011.12.18	75	75	181	180	142	141	114	103
2009.12.19-	0	0	102	107	27	29	75	91

2010.12.18								
------------	--	--	--	--	--	--	--	--

④ Class C3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88	76	140	128	131	121	97	93
2010.12.19- 2011.12.18	0	0	97	89	9	8	88	76

⑤ Class Ce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161	146	110	106	85	84	186	189
2010.12.19- 2011.12.18	66	66	175	171	81	82	161	146
2009.12.19- 2010.12.18	21	21	94	98	49	54	66	83

⑥ Class C장기주택마련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1	1	0	0	0	0	1	1
2010.12.19- 2011.12.18	1	1	1	1	0	0	1	1
2009.12.19- 2010.12.18	0	0	1	1	0	0	1	1

⑦ Class Af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0	0	940	907	516	523	423	441

⑧ Class C4 수익증권

(단위:억좌,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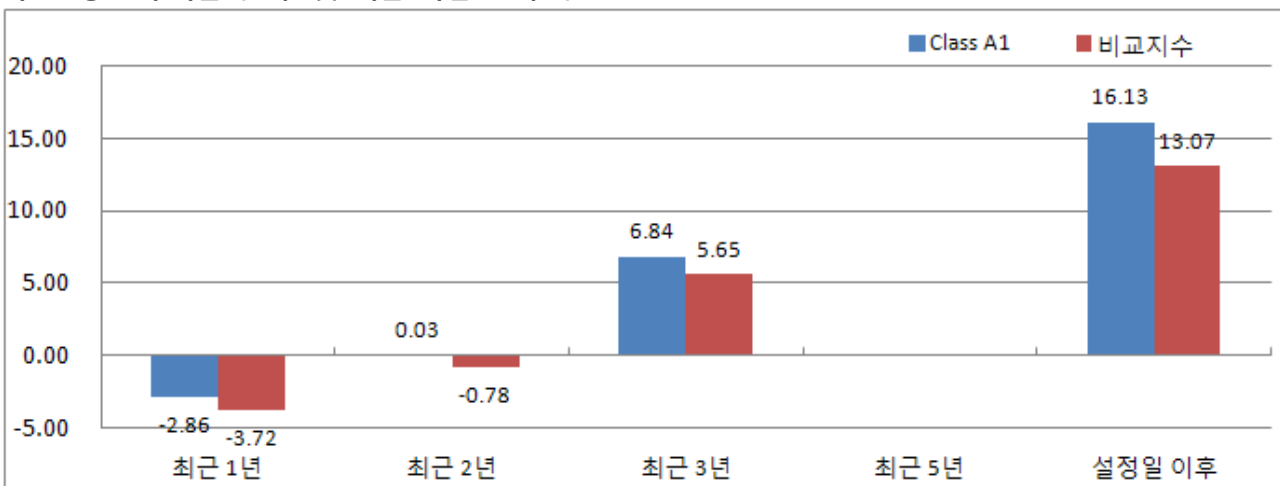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출 자지분 수)	금액
2011.12.19- 2012.12.18	0	0	76	79	22	22	54	59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보수 및 세금 차감전 기준)



주1)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Class A1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평균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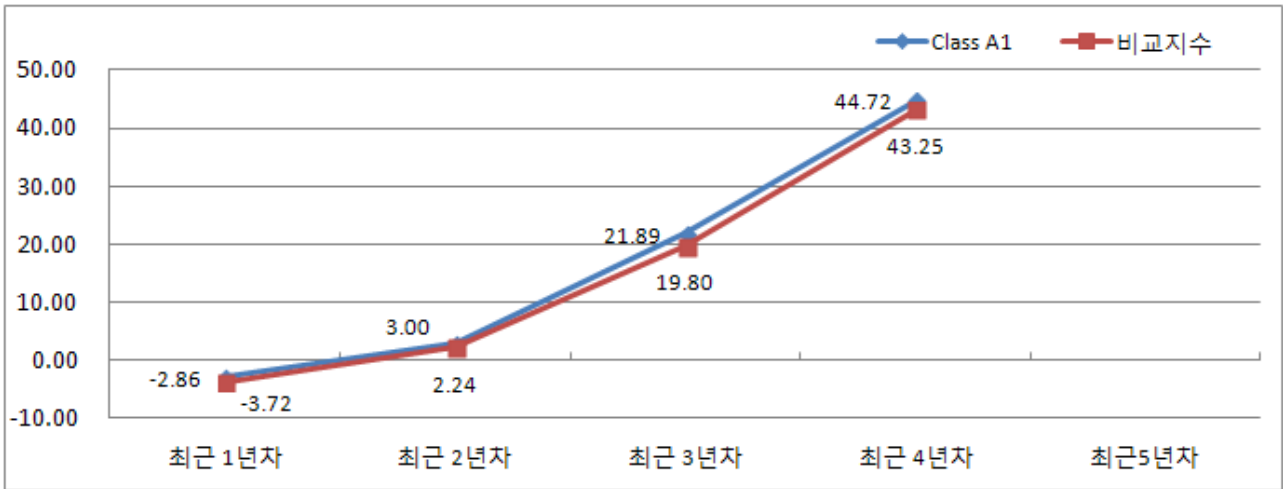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2.03.19 ~13.03.18	11.03.19 ~13.03.18	10.03.19 ~13.03.18	-	08.12.19 ~13.03.18
Class A1	-2.86	0.03	6.84	-	16.13
비교지수	-3.72	-0.78	5.65	-	13.07
기간	-	-	-	-	12.05.14 ~13.03.18
Class Af	-	-	-	-	3.45
비교지수	-	-	-	-	2.00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3.03.18	10.03.19 ~13.03.18	-	08.12.19 ~13.03.18
Class C1	-3.31	-0.49	6.27	-	15.41
비교지수	-3.72	-0.78	5.65	-	13.07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3.03.18	10.03.19 ~13.03.18	-	09.12.19 ~13.03.18
Class C2	-3.42	-0.58	6.17	-	5.63
비교지수	-3.72	-0.78	5.65	-	4.81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3.03.18	-	-	11.01.17 ~13.03.18
Class C3	-3.32	-0.48	-	-	-2.99
비교지수	-3.72	-0.78	-	-	-3.36
기간	12.03.19 ~13.03.18	-	-	-	11.12.29 ~13.03.18
Class C4	-3.25	-	-	-	6.78
비교지수	-3.72	-	-	-	6.90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3.03.18	10.03.19 ~13.03.18	-	09.06.17 ~13.03.18
Class C 장마	-3.35	-0.55	6.19	-	10.94
비교지수	-3.72	-0.78	5.65	-	10.42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3.03.18	10.03.19 ~13.03.18	-	08.12.19 ~13.03.18
Class Ce	-2.59	0.30	7.14	-	16.45
비교지수	-3.72	-0.78	5.65	-	13.07

주1)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보수 및 세금 차감전 기준)



주1)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Class A1 수익증권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도별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2.03.19 ~13.03.18	11.03.19 ~12.03.18	10.03.19 ~11.03.18	09.03.19 ~10.03.18
Class A1	-2.86	3.00	21.89	44.72	-
비교지수	-3.72	2.24	19.80	43.25	-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2.03.18	10.03.19 ~11.03.18	09.03.19 ~10.03.18	-
Class C1	-3.31	2.42	21.18	43.64	-
비교지수	-3.72	2.24	19.80	43.25	-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2.03.18	10.03.19 ~11.03.18	-	-
Class C2	-3.42	2.35	21.06	-	-
비교지수	-3.72	2.24	19.80	-	-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2.03.18	-	-	-
Class C3	-3.32	2.44	-	-	-
비교지수	-3.72	2.24	-	-	-
기간	12.03.19 ~13.03.18	-	-	-	-
Class C4	-3.25	-	-	-	-
비교지수	-3.72	-	-	-	-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2.03.18	10.03.19 ~11.03.18	09.06.17 ~10.03.18	-
Class C 장마	-3.35	2.33	21.08	23.31	-

비교지수	-3.72	2.24	19.80	43.25	
기간	12.03.19 ~13.03.18	11.03.19 ~12.03.18	10.03.19 ~11.03.18	09.03.19 ~10.03.18	-
Class Ce	-2.59	3.27	22.27	45.03	-
비교지수	-3.72	2.24	19.80	43.25	-
기간	12.05.14 ~13.03.18	-	-	-	-
Class Af	2.91	-	-	-	-
비교지수	1.69	-	-	-	-

주1) 비교지수 : KOSPI200지수 *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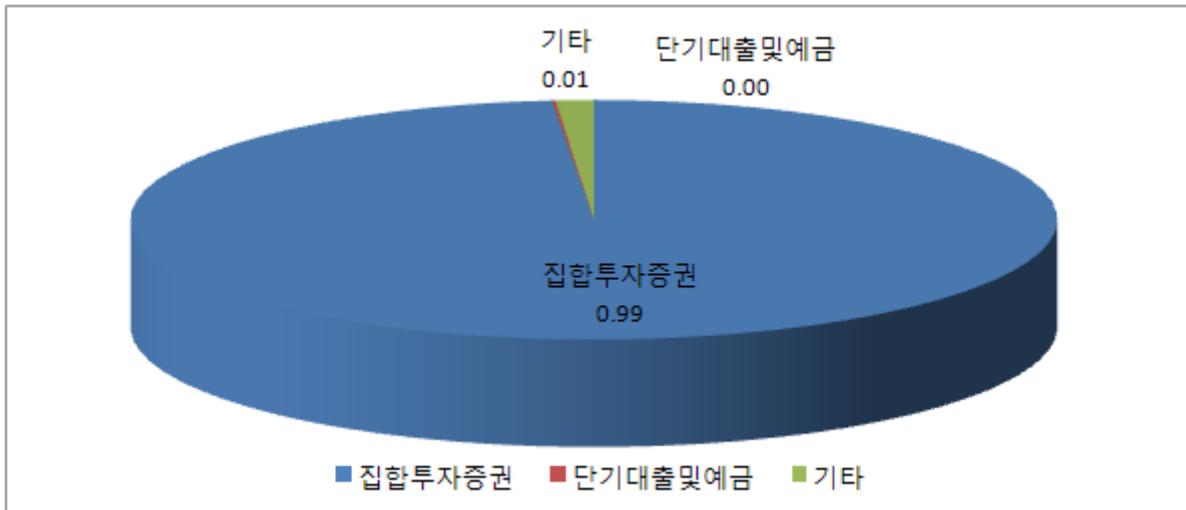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12.12.18현재 / 단위: 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2,620	0	0	0	0	0	3	35	2,659
	(0)	(0)	(0)	(99)	(0)	(0)	(0)	(0)	(0)	(0)	(1)	(100)

합계	0	0	0	2,620	0	0	0	0	0	3	35	2,659
	(0)	(0)	(0)	(99)	(0)	(0)	(0)	(0)	(0)	(0)	(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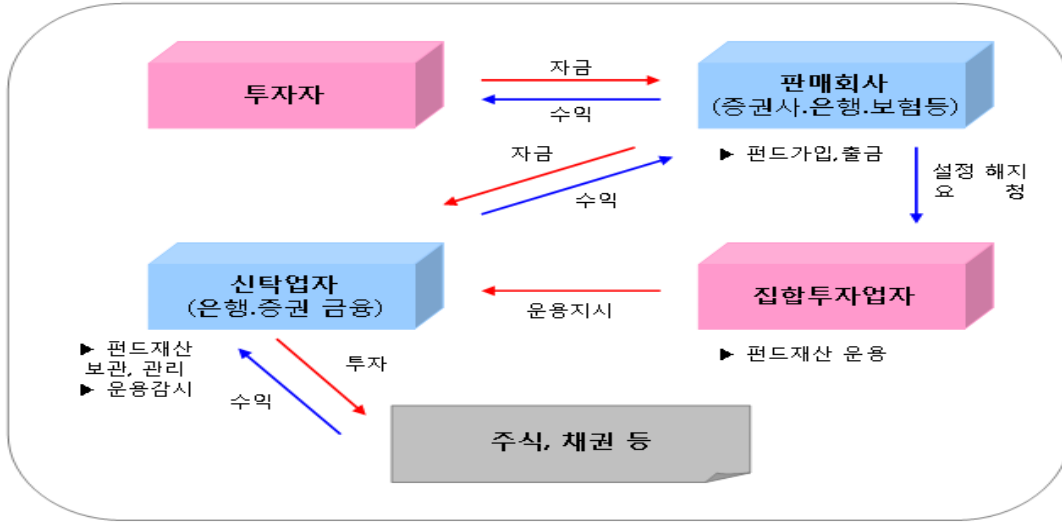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교보악사자산운용(주)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빌딩 15층
연락처	(02) 767-9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yoboaxa-im.co.kr
회사연혁	1988.07.07 교보투자자문(주) 설립 (교보생명 전액 출자) 1996.07.30 교보투자신탁운용(주) 출범 (납입자본금 300억원) 2008.08.28 상호변경 (교보투자신탁운용→교보악사자산운용)
자본금	300억원
주요주주현황	교보생명(주) 50%, AXA Investment Managers 50%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종류				상품						
수탁고	15,493	29,840	1,680	35,830	132	0	0	0	18,257	101,232

2. 운용관련 업무 신탁업자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신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203번지 ☎ (02) 2008-5000
회사연혁등(홈페이지 참조)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①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의무와 책임

[의무]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 (02)2168-040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aitas.co.kr

나. 주요업무

①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층 ☎ (02)399-335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5월 설립 (www.koreabp.com)

회 사 명	나이스채권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npricing.co.kr)

회 사 명	KIS채권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 (02) 3215-1433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2000년 6월 설립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하여야 합니다.

③ 연기투자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에서는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서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투자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됩니다.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

- | |
|---|
|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계약 등 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교보약사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수익자총회사항포함),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비교지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 투자전략의 변경은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 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

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 사항을 교보약사자산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axa-im.co.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 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회계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 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 10)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 이내에 증권 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투자증권 거래	1) 일반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 주문집행능력, 매매체결수수료, 정보제공 및 Settlement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2) Cyber주식매매 -거래증권사 : Cyber 주식매매를 시행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위탁수수료, 매매업무 수행 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3) 일반채권 매매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CD, CP의 주요 중개기관인 신한, 외환, 우리, 산업, 기업은행은 당사 필요에 따라 거래증권사 선정의 예외로 인정하여 거래사에 포함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트레이더, 신용분석가 4) 신규 발행 채권 인수 -국고채를 제외한 신규발행물 인수시에는 거래의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대상으로 선정된 증권사 이외의 증권사와 거래 가능 5) 외화표시채권 매매 -외화표시채권은 매매와 중개기관의 특성상 거래시 운용본부장의 개별 승인을 득하여 거래 가능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	1)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거래증권사 :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정보/영업능력, 위탁수수료, 매매업무수행능력 등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 2)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p>-선물중개사 : 중개기관으로서의 안정성, 거래 효율성, 정보제공능력, 업무의 편의성 등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하여 평가</p> <p>-평가주체 : 포트폴리오 매니저</p>
--	--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 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투자금융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 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 옵션과 유사합니다.

